

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8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8 월 31 일

발 의 자 : 윤광열의원 외 10인

1. 제안이유

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
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관계공무원의 범위규정 (안 제2조제2호)

· "실·국장"을 "국장"으로 개정

3. 개정근거

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2호중 “시장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, 담당관, 과장급”을 “시장의 보조
기관중 국장, 담당관, 과장급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생략)	제2조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시장의 보조기관중 <u>실·국장</u> , 담당 관, 과장급	2. 시장의 보조기관중 <u>국장</u> , 담당관, 과장급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